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14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



국회의원 이재정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
❖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
❖

프 로 그 램

-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14:00~16:5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
- 주 최 : 이재정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05(5분)	개회	· 진행 : 김용국 위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14:05~14:15(10분)	인사말씀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정문자 아동권리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14:15~14:25(10분)	선감학원 관련 동영상	
14:25~14:40(15분)	발제 1.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	· 김재완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14:40~14:55(15분)	발제 2.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 실태 및 현안	· 김영배 회장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14:55~15:10(15분)	발제 3.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및 대책과제	· 원미정 의원(경기도의회)
15:10~15:25(15분)	발제 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내용	· 윤채완 과장(국가인권위원회)
15:25~15:35(10분)	휴식	
15:35~16:25(50분)	토론	· 정진각 소장(안산지역사연구소) · 김민환 교수(한신대학교) · 한일영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16:25~16:45(20분)	종합토론	참석자 모두
16:45~16:50	정리	진행자



목차

Contents

▶ 인사말씀	1
▶ 발제1.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	5
김재완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 발제2.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 실태 및 현안	15
김영배 회장(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 발제3.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및 대책과제	21
원미정 의원(경기도의회)	
▶ 발제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내용	31
윤채완 과장(국가인권위원회)	
▶ 토론문	
정진각 소장(안산지역사연구소)	51
김민환 교수(한신대학교)	55
한일영(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61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65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의회 및 선감학원아동피해 대책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19년은 선감학원이 폐쇄된 지 37년째 되는 해입니다.

당시 십대에 막 접어들었던 피해자들은 이제 장성한 성인으로, 또는 한 가정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감학원의 피해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자임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감학원은 우리 과거의 아픈 상처입니다.

상처를 덮는데만 급급할 뿐 근본적 치유방안이 없다면 상처는 덧나고 더 큰 고통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가 국민에게 진정 사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감학원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법 제정과 향후 피해자 보호대책마련의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함께 손잡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정문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공동주최하신 이재정의원님,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기에 당한 인권침해는 아동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가로막고,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랫동안 피해가 남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고통받은 아이들의 뼈아픈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소년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산 선감도에 설치하였고, 해방 이후 1982년 폐쇄되기까지 40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아동들이 수용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부랑아 정책 아래, 단지 복장이 남루하다거나 행동이 불량하다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강제노역과 열악한 환경, 폭행 속에서 고통 받다가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간신히 탈출하거나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30년이 넘는 지금도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피해사실 및 피해 구제 등의 대책을 담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018.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국회를 대상으로 선감학원사건 관련 특별법을, 행정안전 자원부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피해생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이 국가에 의한 아동폭력 사건임을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잘못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책임의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감학원 피해생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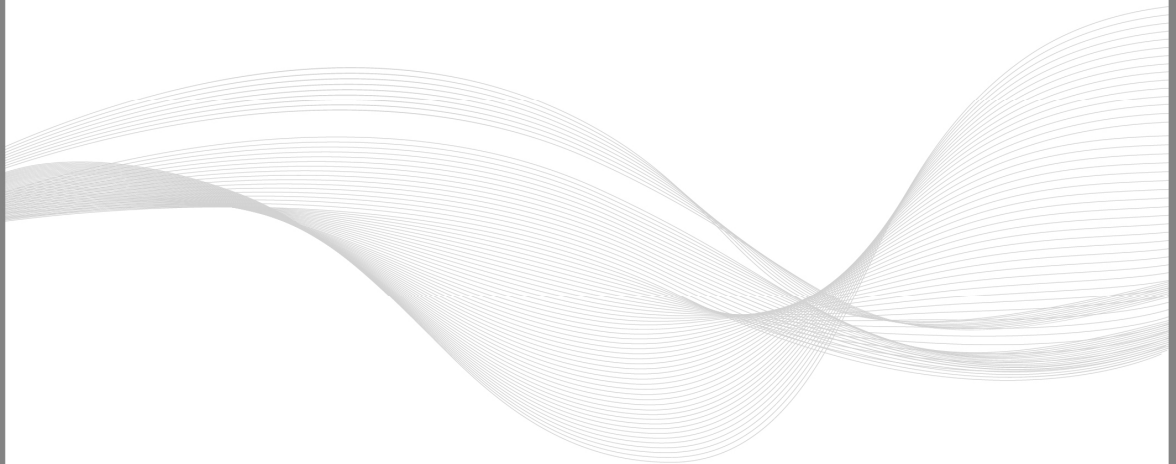
참석해 주신 피해생존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정 문 자

발제1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

김재완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

김재완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선감학원(仙甘學園)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에 당시 경기도 부천군 소재 선감도(현재는 안산시 대부면)에 설립된 소년 감화원시설이다.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그대로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했다. 소년 감화원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감화령(1923년)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1963년)에 의해 운영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부랑아 수용정책은 조선감화령,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의 법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소위 부랑아, 불량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에 대한 사적 생활의 기반을 박탈하고, 사법적 처벌에 대한 보호처분과 교정의 명목으로 감화원, 교정원 등의 시설에의 수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일제말기에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감화원 등의 설치와 수용은 전시체제 확립에 따른 황국신민의 전사와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는 것이었다. 아동, 부랑아에 대한 수용의 기초가 된 법제의 내용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그 자체가 광범위한 불법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즉,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및 선박 안에 잠복한 자,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사방을 배회하는 자, 구걸을 하거나 하게한 자” 등과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명목은 대대적인 강제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의적인 명령 문구로 작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만들으로써 그들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와 기제는 해방 이후 군사정권시기의 통치방식에도 그대로 유용한 것이었다. 정권유지를 위해 체제안정과 안보강화의 프레임이 작동했고, 감화원과 같은 수용시설들은 그러한 체제유지와 강화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운영 당시 기록,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선감학원의 수용원생들은 부모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수용되거나 정확한 신원확인 및 보호조치 없이 강제로 끌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기본적인 의무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각종 강제노역에 동원했으며, 탈출 시도 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 등에 암매장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참혹상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선감학원 부원장의 아들로 잔혹한 현장들을 직접 목격했던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쓰(井原宏光)가 1989년 참회소설 『아! 선감도』를 발표하고, 이것이 1995년 국내에 번역 출간되면서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의 선감학원의 문제적 실태가 드러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일부 언론에서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방 후의 실상을 보도한 후, 경기도의회에서는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4일 ‘선감학원 희생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상반기에 진상조사 연구활동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는 2017년 6월 진상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특위의 활동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연구용역만으로는 과거 문헌 등에 대한 자료 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감학원은 그 당시 관할하던 경기도에 1차 책임이 있으나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아니었기에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2017년 7월 18일 국가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과거 2005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도 했다.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점을 이념적 지표로 천명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건국 직후에는 외세가 개입된 가운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였고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앞세운 독재 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의혹조작사건 등 부끄러운 역사를 수없이 반복하여 왔음. 최근에 들어 전반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명분아래 수많은 진상규명 관련 법률들이 양산되어 왔으며 아직도 간헐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이들 개별법은 각각 당해 사건에 국한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내지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화해의 노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국 전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역사와 국가발전을 기약하고자 함.”

당시 이 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05년 12월 1일 출범했고,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여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시작하여 4년 2개월 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화위의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기의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문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현대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룬 것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건 신청 기간이 1년에 불과했고 예산 및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해, 상당 규모의 국가폭력·인권침해 사건들이 진실규명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감학원을 비롯한 군사정권 통치 시기 내내 운영되었던 다수의 부랑인 강제수용 시설의 문제는 진화위에서 다루어지지조차 못했다. 1987년에 부랑인 강제수용의 실태와 운영의 참혹상을 드러냈던 형제복지원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6년 7월 6일에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2012년 피해생존자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 하나의 인권침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며, 피해자들이 2000년대 중반에 발족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당시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주요내용

- 가. 진실규명의 목적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 나.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대상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 라.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 마.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4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 바.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2조).
- 사.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보상특별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 아.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60인)〉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존속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 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입은 적이 있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 라.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의를 있는 경우 신청 및 그 후속 절차를 위원회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 마.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장의2 신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4인)〉 주요내용

- 가. 진실규명의 범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통치시대’를 ‘이 법 시행일까지’로 수정하여 기간을 명시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지원활동과 과거사재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함(안 제3조).
- 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 교섭단체수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을 6인으로 하고 상임위원 중 국회추천을 4인으로 하며, 위원 자격에 민주인권 분야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 라.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9조).
- 마.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 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6조).
- 사.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에 설립하여야 하며, 과거사재단의 사업에 유해 발굴사업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활동의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 치료사업, 교육 연구 및 교류사업을 추가함(안 제40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자격에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 나.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 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위법 부당함이 밝혀졌을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 2 신설).
- 마.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주요내용
<p>현행법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등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어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해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p>

현 정부에서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도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향은 두 가지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둘째는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통과되는 것이다.

선감학원특별법은 1942년 경기도 부천군 대부분 선감리(현재의 안산시 선감동)에 세워진 선감학원이라는 감화시설에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한 사건, 선감학원에 수용된 사람이 국가기관의 방치 하에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을 당하거나 이러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 정신적 장애 등에 이르게 된 사건인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상과 국가책임 여부를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인권유린의 현장에 대한 문화적·교육적 장을 마련하는 것 등은 우선적으로 일제로부터 군사정권 통치기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이 인간에게 자행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민과 국민에게 기억시키고,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복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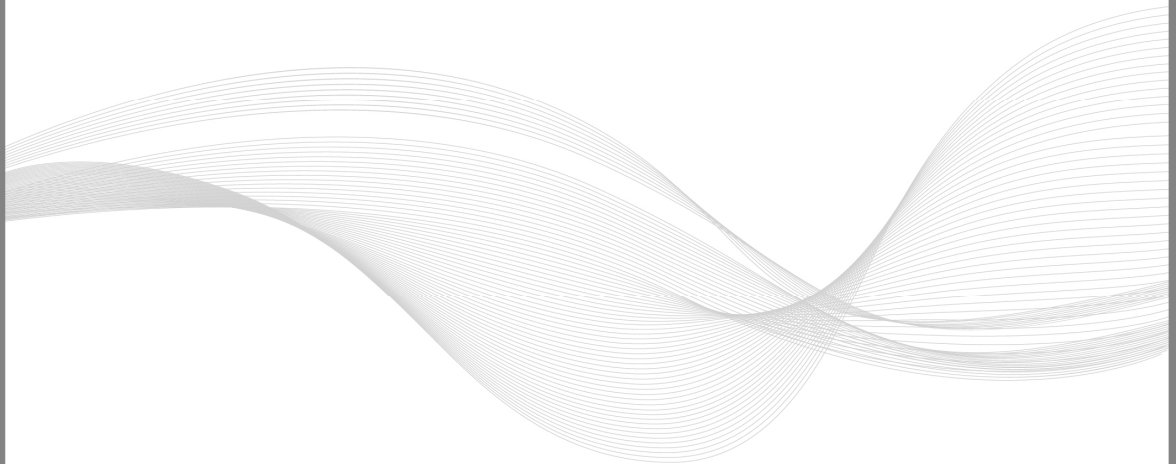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활동 방향〉

-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 운동의 주체는 피해생존자들이다. 피해생존자모임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증언하고, 그들의 언어로 기록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 모임 등과도 연대하여 활동하는 등 여러 관련 단체와 연대활동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다양한 분야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큐제작, 심층탐사보도, 연극이나 영화 등의 예술분야에서의 작업 등을 통해 역사적·현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 사건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자회견, 학술대회, 토론회, 증언대회, 자료공개 및 발표회, 관련 논문의 생산과 발표, 언론의 심층기획 보도 및 기사와 기고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와 의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의 현장을 피해자 및 시민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인권 공동체를 위한 역사문화치유추모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발제2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 실태 및 현안

김영배 회장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 실태 및 현안

김영배 회장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이란?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현재의 안산시 선감동(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 부천군 대부분 선감리) 섬에 세운 부랑아 수용소이다. 일제 당국자들은 토막을 중심으로 한 도시빈민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또한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암적(癩的) 존재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시 빈민들을 교외지역에 추방하고 후속대책으로 길거리의 부랑아들을 단속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들을 태평양전쟁의 지원병으로 키우기 위한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랑아 수용을 목표로 하였던 선감학원 시설은 해방 이후 미 군정은 1946년 2월 경기도에 이관하였고 1982년까지 경기도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운영 어떠한 법적인 근거 없이 선감학원에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6.25전쟁으로 피난민이 늘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난민과 전쟁고아를 수용하였지만 1955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부랑아 수용소로 운영되었다.

특히 5·16 이후 군사정부는 부랑아(浮浪兒)는 곧 불량아(不良兒)라는 인식아래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사회에서 격리해야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주요 도시와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국가 체면을 손상한다는 이유로 부랑아의 수집을 지시하였고, 무조건적인 단속은 그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짓밟았고, 수용되는 아동들은 보호받을 수 없었으며 단속의 숫자는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1961년 5.16 이후 군정은 단속한 부랑아 수 및 그 수적인 감소를 근거로 이전부터 계속된 사회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왜곡된 성과주의와 거짓된 이미지 조작의 행정으로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을 억압하며 정책을 미화하였다.

누가 부랑아인가?

우선 부랑아의 정의가 무엇인가? 수용소에 들어온 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강제로 납치되어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된다. 선감학원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동들을 경찰과 공무원이 거리에서 잡아들여 선감학원으로 인계했다. 특히 이들은 거주지가 명확하고 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무조건 수용소로 보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찰이 납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실종신고는 별 의미가 없었다. 이는 아동 수용 실적이 근무평점에 반영되는 등 구조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선감학원에 납치된 아동들은 매일같이 곡괭이자루로 매질을 당하고 광활한 토지를 일구는 중노동에 시달려야했다. 공권력은 인적사항까지 조작하며 이들의 사회적 존재를 소거시켰다. 다수의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은 퇴소 또는 탈출 이후 성인이 되어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알고, 선감학원 입소 기록으로 호적을 새로 만들었다.

생활환경

수용인원 중 대부분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12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강제노역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노동의 성과가 약하였기 때문에 원생들의 생산효과는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사에 대한 부족한 대우는 전 시기 모든 원생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당시 식량부족은 국가적인 현상이기도 하였지만 원생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더욱 열악하여 강냉이밥, 수제비, 콩보리밥 등이 제공되며 반찬의 경우 소금 한 줌, 또는 간장 한 숟갈, 구더기가 살아있는 곤쟁이젓, 새우젓 등 한가지만이 조금씩 제공되었다. 이것도 부족하여 들에 나는 열매, 들풀, 곤충, 뱀이나 쥐를 잡아먹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뱀에 물리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60년대 초에는 칫솔도 없어서 모래로 이를 닦는 일도 있고 겨울에 양말 지급이 되지 않아, 맨발에 검정고무신을 신었고, 겨울아침 조회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바람을 피하려고 서 있다가 발이 너무 시려서 자기 발에 오줌을 싸는 동료도 목격하고, 장갑하나 없는 손, 양말도 없이 맨발인 발엔 동상이 들어 살이 썩고 걸음을 못 걸을 정도의 아픔을 10대에 경험 하였고, 실제로 선감학원 수용자 중 동상경험자가 많았다. 이 밖에 글로 담지 못한

어린이들이 견디기엔 너무도 고통스러운 아픔이 많았다.

강제노동

원생에게는 일괄적으로 노동할당량이 주어졌으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다. 8~9살 어린이들은 여름에 퇴비 철에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퇴비 만든다고 풀을 베어서 퇴비장 쪽에 풀어 놓고 아침식사하고 끝나면 숙소 앞에 청소하고 개인 청소하고 점호하려고 운동장으로 집결해서 인원파악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봄에는 모 심고 여름에 가물어서 눈에 물대느라고 물지게로 지어서 주고, 가을엔 벼 베어서 묵었다 쌓아 놓고 뒤집고 마르면 운반하고 일반 어른 농민들과 똑같이 했다. 양잠 누에는 2~3시간 마다 밥을 줘야했기 때문에 뽕잎을 따서 잠을 못자며 돌봐야했다.

힘센 원생을 골라 사장과 반장으로 내세워 관리하게 하면서 원생들에 대한 혹독한 기합과 구타는 더욱 거세졌다. 직원들은 원생들의 관리보다는 사적인 노동력 착취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용인원이 증가하면서 관사 당번이라는 직책을 내세워 특정 원생에게 관사를 관리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소, 닭 등을 키우게 하고 개인적인 농작물재배와 굴따기 등의 노동력의 개인 착취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성인이 되어 선감학원에 나가려할 때도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 지급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을 인근농가의 노비(무보수 며슴) 또는 상점의 무보수 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켰고, 당시 아이들 체구보다 더 큰 삽, 곡괭이 등 연장을 메고 할당량의 일을 부여받았고, 누에를 기르기 위하여 가을 걷이가 끝나는 시기에 야산을 개간 하여, 그 곳에 뽕나무를 심고, 월동대비 연탄 나르기는 2km가 넘는 염전길을 맨살에 연탄을 업고, 안고 운반하는 일 등 어린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노역을 해야만 했다.

생존자들의 현재모습

어린 시절 납치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로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으며 죄도 없이 오랜 감금생활로 가족을 만나지 못해 지금 독거노인이 상당수에 달한다. 폭력과 기합에 의해 지금도 후유증으로 상처가 남아있다.

이들은 수용소시절 매일 구타를 당하였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합을 받았다. 또한

성폭행이 자주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 납치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 폭력과 기합에 의한 후유증에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고, 오랜 감금생활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여 독거노인이 된 원생도 상당수에 달한다. 한 원생은 강제수용당시 다리 피부표면에 굴 껍질이 박혀 성장과정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몇 번의 수술을 받던 중 다리를 절단하였고 현재는 요양원에 입원 생활하고 있다.

생존자에 대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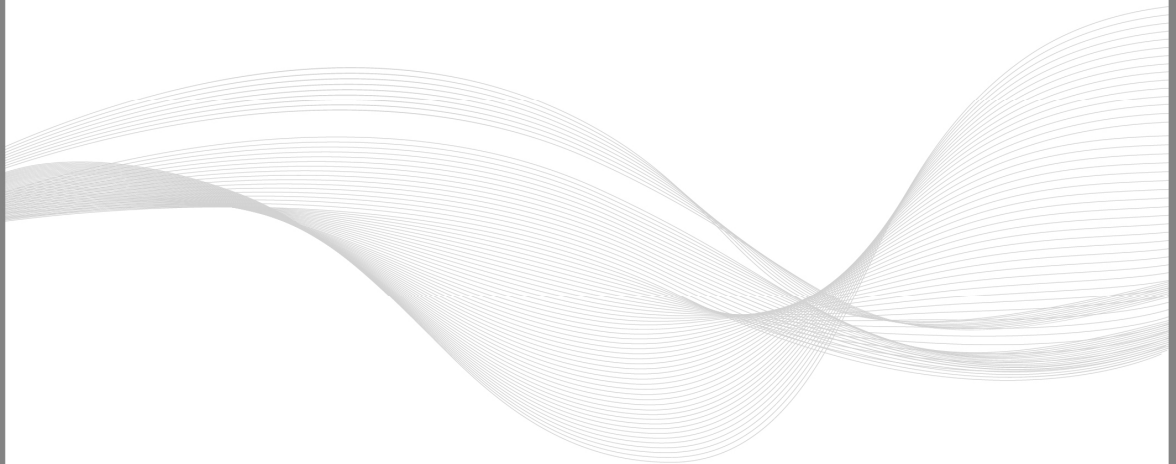
- (1) **명예회복** : 일정한 기준 없이 웃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바다가운데 있는 섬에 수용하여 중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선감학원 출신 원생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와 사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 (2) **노후대책** : 납치와 선감학원 수용으로 교육이 단절되어 생계유지를 제대로 못한 원생들의 연령이 60대를 넘어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다. 이들의 노후대책이 절실하다.
- (3) **납치에 의한 트라우마 치료** :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우울증에 걸려 자포자기로 자살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삶을 일찍 마감한 경우도 많다. 조속한 치료조치가 있어야한다.
- (4) **폭력에 의한 상해치료** : 선감학원에서 당한 구타로 인해 현재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원생들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 (5) **뿌리찾기** : 국가폭력에 의해 가족과 이별하여 현재까지도 찾지 못한 경우도 많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족상봉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상 현존하는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폭력 아동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발제3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및 대책과제(경과 및 역할)

원미정 의원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및 대책과제 (경과 및 역할)

원미정 의원 (경기도의회)

I.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 해결 관련 노력

1.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 선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대집행부 도정질문 시행(2015.11.5.)
-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2016.2.24)
-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 현장방문(2016.7.25.)
-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한 학술회의(2016.5.26.)
-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 실시(2016.9.22. ~ 10.21)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버스 자막 뉴스를 통해 홍보 후, 관련 접수 의견 47건 확보.
-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용역 추진(2016.12.~2017.6)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면담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관련 사업 추진 당위성과 방안 제시.
-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10차례의 회의 진행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

2. 경기도의회 간담회(원미정 의원 주재)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자 의견 수렴 간담회(2018.8.13.)
 - 사건 피해자 40여명 참석,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피해지원 방안 의견 수렴
 -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결과, 거주지 마련, 생활비 지원, 치료 지원, 일자리 마련 등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상담(2018.8.17.)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집행부 간담회(2018.8.17., 8.30., 9.10.)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관련 부서 전체 간담회
-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2018.9.17.)
- 선감학원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회의(2018.10.8.)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지역사회, 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촉구를 위한 대책 협의체 구성 제안

3.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위한 입법 활동 등

-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16.2.24.)
- 기존 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할 수 없었던 한계가 존재.
 - 2018년 10월, 조례 일부개정(대표발의: 원미정 의원)을 통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 정비.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 및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 등의 생활안정지원
2. 희생자 유해 발굴
3. 선감학원 유적지 정비·관리 사업
4.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
5. 선감학원 사건 및 유적지 순례 사업
6. 선감학원 관련 문화·학술·기념 사업
7. 선감학원 사건 추념 사업
8.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9.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경기도의 현행 피해자 관련 사업

- 선감학원 사건 발생 장소인 선감도의 구 선감학원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경기창작센터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관련 체험 교육센터로 육성하여 선감학원 관련 교육을 실시.
- 선감역사박물관 운영을 통해 선감학원 관련 동영상, 문헌 제공 및 예술작품 등 관련 콘텐츠 전시.
-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공식 위령제 추진(3회)
 - 매년 5월 28일, 1박 2일간 추모음악제, 역사탐방 사업 등이 포함.
- 선감학원 희생자 모역 정비 사업을 통해 학원생 모역관리 추진.

II.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한 역할

1. 선감학원 사건의 책임자로서 경기도

-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의 선감도 섬에 감화원 성격으로 설립됨.
- 1946년 2월 경기도 관할기관으로 이관된 이후, 법적 근거 없이 부랑아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격리·수용하였음.
-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였음.
 - 선감학원 지원예산에도 불구하고 원생들의 식사 등 지원 부족을 경기도가 감사·지적한 바 있음(참고1).
 - 1961년 11월 당시 경기도지사(박창원)는 선감학원을 시찰하고 선감학원 제반 대책을 언급(참고2).
 - 1963년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경기도조례 제176호)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경기도 운영 근거를 마련(참고3).
-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으나, 경기도로 이관 운영된 근거를 볼 때, 이후 선감학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경기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선감학원 사건 책임자로서 경기도의 피해자 지원 사례 및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당연 가능함.

〈 국가배상법 〉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등에 따른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사건들의 보상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선감학원 사건 역시 경기도가 사건의 책임자로서 지원을 해야 함.

〈 경기도 내 피해보상 유사사례 〉

①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건물 입주 소상공인 지원

- 2015년 「경기도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도비 10억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지원

② 판교 환풍구 사고 수습 및 사후 조치

- 2014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에서 진행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인파가 몰려 환풍구가 붕괴되어 관람객 27명 사망, 11명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당시 행사 주관기관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었음.

- 당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행사 공동주관)가 사망자 보상을 5:5로 지급

- 부상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

③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고 부상자 등 보상금 지급

- 1995년 8월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화재(방화)에 의한 사망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III. 결어

-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 하는 등, 선감학원 관련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음.
-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당사자로서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지원 등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2018.10)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및 피해자의 위령사업, 추모사업 뿐만아니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의료지원,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경기도는 선감학원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에 따라,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제반 자원 등을 이용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야 함.
- 또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의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참고 1 선감학원에 대한 경기도 감사·지적 (경인일보(1956.8.31.))



참고 2

선감학원 시찰 (1961.11)



참고 3 선감학원 조례

성기도 선감학원 조례

(1963. 2. 22. 조례제176호)

제1조 (설치) 부랑아의 구호및 지도를 위하여 선감학원 (이하 학원이라 한다) 을 둔다

제2조 (위치) 학원은 부천군 대부면에 둔다

제3조 (업무) 학원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부랑아의 수용구호
2. 부랑아의 지도및 직업보도
3. 기타 학원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조 (원장및 부원장) ① 학원에 원장및 부원장을 두되 원장은 지방형집참사로서 보한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공무원) 학원에 원장 부원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규칙)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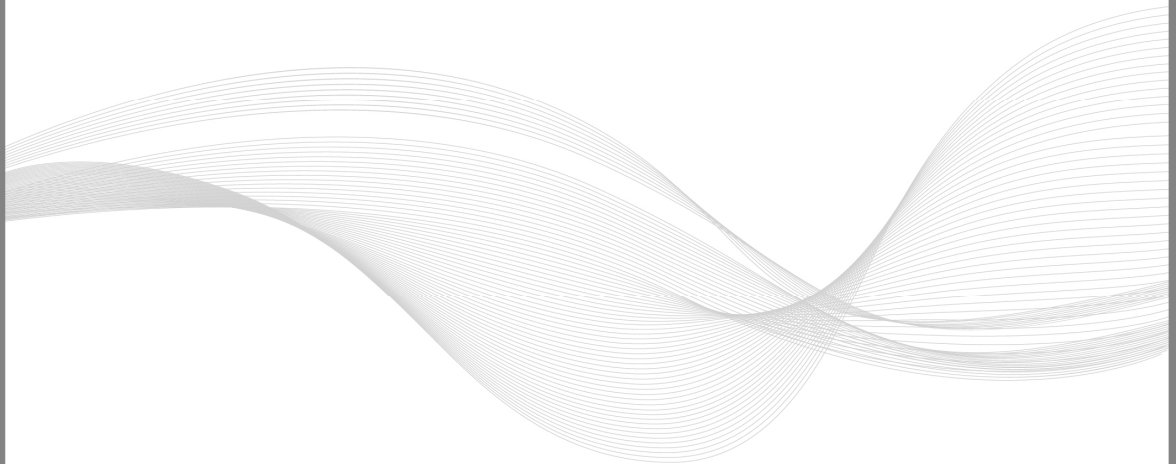
부 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제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내용

윤채완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윤채완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

I.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 11. 26.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이 의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 가.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의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및 상담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결정은 2017. 8. 13.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50여명이 선감학원에서의 강제수용, 폭행 및 구타, 강제노동 등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해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한 것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의 내용이 국가폭력에 관한 과거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뢰하여 관련 자료들을 조사 및 분석하고, 피해생존자들을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하여, 지난 2018. 6.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진선미 국회의원실과 함께 6. 22. 국회에서 선감학원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 및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선감학원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II. 결정의 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8월에 이 진정을 접수한 뒤, 기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 조사를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개별적 진정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이라는 판단 하에,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개별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없고, 오래전 자료들을 확보하고, 안산지역에 있거나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야 하는 사건 특성상, 이 사건을 이미 상당기간 동안 다루고 계신 외부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과 해당부서장, 담당 조사관 등은 작년 11월 1일 선감학원 터에 자리 잡은 경기창작센터, 선감역사박물관 및 공동묘지 등을 현장방문하여 처음으로 그곳에서 피해생존자 분을 처음으로 만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둘러봤다. 그 동안 국가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 사건에 대해 무지했던 점을 깨닫고, 이후 안산지역사연구소 등 전문가 및 활동가 그룹에게 자료수집과 분석을 의뢰하고, 수차례의 크고 작은 간담회와 의사소통을 거치면서 올해 5월말까지 보고서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6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를 발간했고, 국회에서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했다. 다행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이로 인해 언론을 본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이 추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연락을 해 왔다. 담당조사관이 이 분들을 개별적으로 면접조사를 했고,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로 연계해 드릴 수 있었다. 이후에도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님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 10 . 22. 드디어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그리고 다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감학원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정부에 그리고 대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III. 결정의 주요내용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등에서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제7조에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취급을 금지하고,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굳이 국제규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 조례와 원생대장의 관리, 선감학원 특별감사 보고서, 선감학원 폐쇄 결정 등을 볼 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선감학원 운영에 관여했음은 충분히 확인된다. 선감학원이 운영되는 동안 부모 등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색이 남루한 거리의 수많은 아동들을 공무원 또는 경찰이 납치하여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굶주림 등에 시달리게 하고, 적절한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위법한 침해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본권보장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스스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행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넉넉히 추정된다고 보았다.

선감학원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에 의견표명과 관련해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선감학원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이행이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지 약 9년이 경과하였고, 조사 중이었던 사건들을 포함하여, 과거사 위원회 활동 종료이후에 새롭게 대두된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법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제를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가가 스스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다시 활동을 개시하게 하여 조사가 중단되었던 사건들과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구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도출된 의견표명이다.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생존자들은 모두 고령에 접어들었다. 어린 시절에 노출된 장기간의 끔찍한 폭력은 충분한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발달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빈곤, 질병 등에 노출되게 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작업에서 실시했던 피해생존자분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28명의 응답자 중에서 전체 약 21.4%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약 40%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응답자 중 57%가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렇게 사회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피해경험에 대해서 진술하고, 정부에 어떤 의견을 표하는 피해생존자는 전체 피해자 중에서 극소수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분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숨은 피해생존자들이 매우 많으리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이렇게 고령이 된 피해생존자들에게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바라보게만 하여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서 지원해야 한다. 거주시설의 제공이나 쉼터의 제공, 생계 및 의료보장 제도에의 원활한 연계, 상담센터나 피해신고센터의 개설이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실시, 기념관이나 위령공원의 설치 및 연계적인 기념사업이나 위령제의 실시, 현 선감학원 터의 보존과 남아있는 선감학원 숙사의 보존 등은 현행 제도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지원정책을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두 번째 의견표명의 내용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생존자들을 만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피해생존자들의 절차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특히 중요하게 봤다. 과거 많은 국가폭력 관련 특별법의 시행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가족 등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지위를 단순히 법 적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고, 선감학원 사건 관련 결정에 “피해생존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라는 문구를 넣어, 이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했다.

IV. 나가며

피해생존자 분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가 아무리 의견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진상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생존자 분들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제 갓 입장을 정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 그 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붙임. 선감학원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
사 건 17-진정-0773700, 18-진정-0175100, 18-진정-0511300(병합)

주 문

1. 이 진정을 각하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 가.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의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및 상담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

I.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2017. 8. 13.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50여명¹⁾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선감학원에서의 강제수용, 폭행 및 구타, 강제노동, 사망 및 매장, 부당한 처우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각하한다.

II. 의견표명의 배경

위원회는 이 진정의 내용이 국가폭력에 관한 과거사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2018. 5. 28.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8. 6. 22.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8. 10. 16.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경기도가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 추가적인 국가폭력사건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²⁾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아동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선감학원 사건에 관하여 국가가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피해생존자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게 되었다.

1) 본 사건의 발생 이후 상당기간 시간이 흘러서 정확한 피해자 관련 통계는 없고, 현재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피해자의 수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5건이고, 이외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장준하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2건이 계류 중에 있다.

III.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28조, 제37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8조, 제9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2. 참고기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 훈령 제410호, 이하 ‘내무부 훈령 제410호’이라 함),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령」(보건사회부령 제92호, 1962),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6. 결정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등을 참고하였다.

IV. 판단

1. 선감학원 피해사건 개관

가. 사건개요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 5. 29. 조선총독부가 군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당시 경기도 부천군 선감도(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에 설립하였고, 해방이후 1946. 2. 1. 경기도가 인수해 국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 시설로 사용하다가 1982. 10. 1. 폐쇄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는 이른바 아동을 포함한 부랑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단속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이들의 신병을 확보, 부랑아 및 부랑인 선도를 위한 시설에 인계하여 수용하도록 하였다.

당시 정부는 부랑아를 일소하기 위해 최초의 범정부적 대책으로 1956년 법무부·내무부·보건사회부 합동으로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을 발표하였고, 위 정책을 주로 서울시립아동 보호소를 통해 실시하였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보호자가 있고, 범법 행위가 없는 아동을 포함한 부랑아동들을 선감학원 등 지방 각지 부랑아 수용시설에 분산 수용하였다.

이러한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에 대하여 시설 내에서 가해진 강제노동,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례 뿐 아니라, 당시 부랑아 단속 조치와 단속된 부랑아들을 부랑아 수용시설로 인계하여 수용한 조치 및 퇴소 제한 등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와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 선감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진정인의 진정서, 경기도의 제출자료, 위원회가 파악한 피해생존자들 다수의 진술과 선감학원 관련 자료, 관련 법규 등에 따르면, 선감학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부랑아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수용, 강제노동, 폭행, 상해, 열악한 처우 그리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경기도조례 제89호, 제176호, 제268호, 제1275호에 따르면, 선감학원은 부랑아 자립생활 시설로 ‘부랑아의 수용구호 및 직업보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행정 사무관을 학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경기도의 선감학원 특별감사(1981)에서 아동시설의 전문성 부족, 직원의 공금횡령 등이 밝혀져 경기도는 선감학원 민간위탁운영법인을 모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1982년 선감학원을 폐쇄조치 하였다.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³⁾에 따르면, 부랑아에 대한 정부 대책의 목적이 “철저한 단속과 보호책을 강구하여 부랑아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수용보호, 본적지 송환, 배우자 단속, 부랑행위의 방지, 기타 이에 대한 중앙 및 지방관계부처의 공동책임 하에 이를 강력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르면,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 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꺾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해하는 모든 부랑인”(제1장 제2절)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지어 노변행상, 빈지게꾼, 성인 꺾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준부랑인’으로 규정(제1장 제3절 제6호)하여 부랑인 대책에 준하는 단속조치를 하였다.

3) 정부가 1956년 부랑아를 일소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대책으로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합동으로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였다.

1) 강제수용 및 수용현황

일제강점기에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선감학원에 입소시켰으며, 경기도 이관 이후 시설이 폐쇄되는 1982년까지 부랑아동, 빈곤아동을 납치 및 강제 집단 수용하였다. 특히 부랑아동의 구호 및 치료라는 명목으로 보호자가 있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아동을 강제 수용하였다.

선감학원이 설립된 1942년부터 폐쇄된 1982년까지 남아 있는 선감학원 관련 기록은 거의 없으나, 경기도를 통해 입수한 ‘1980년 선감학원 현황(1974~1980년)’에 따르면, 선감학원의 종사자는 18명(정원 20명)이었고, 수용아동은 1974년 295명, 1975년 269명, 1976년 133명, 1977년 136명, 1978년 106명, 1979년 130명, 1980년 88명(6년간 총1,157명)으로 나타났다.⁴⁾

한편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문서에 따르면, 1982. 7. 15. 현재 선감학원 아동 입원누계 5,759명, 퇴원누계 5,694명, 현원 65명으로 나타났다.⁵⁾ 또한 선감학원 인근에 있었던 당시 선감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1957년부터 1973년 사이에 보호자가 ‘선감학원’으로 기재된 중도 퇴학자는 703명으로 조사되었다⁶⁾.

2) 강제노역, 원생 처우

선감학원의 자립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선감학원 특별회계 조례」⁷⁾에 따라 강제로 수용된 아동들에게 각종 노동이 부과되었다. 대부분이 12세 이하인 수용아동들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의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이들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은 선감학원 운영비로 충당되었으며, 일괄적으로 부과된 노동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쉬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폭력을 가했다.⁸⁾

4) 경기도가 제출한 국가기록원 자료와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선감학원이 경기도 관할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현황 자료 외에 선감학원 관련 인원현황이나 통계 등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음. 다만 1964. 10. 26.자 경향신문에서 선감학원생을 427명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본 진정사건의 진정인과 같이 1974년 이전과 1980년 이후의 수용되었던 인원을 감안하면 수용아동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5) 국가기록원, 「선감학원운영대책」, 생산기관 : 경기도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생산년도 : 1982년, 관리번호 BA0173895

6)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선감학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6), p.103.

7) 「경기도 선감학원특별회계조례」 제2조 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생산물자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1957. 2. 9. 조례 제90호)

당시 식량부족은 국가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선감학원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콩보리밥, 강냉이밥 등이 제공되고, 반찬은 소금, 간장, 곤쟁이젓, 새우젓 등 한 가지만 조금씩 제공되었다.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용아동들은 열매, 들풀, 동물 사료, 곤충, 뱀, 쥐 등을 먹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3) 폭행, 가혹행위

단체기합, 폭행과 구타는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부분으로,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선감학원 직원들이 힘센 수용아동을 골라 ‘사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하고, 다른 수용아동들을 관리하게 하여 이들에 의한 구타 및 폭력, 성폭행도 심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도 지원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구타 및 폭행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로 현재도 신체적 장애 및 불면증, 우울증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⁹⁾.

4) 사망, 매장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탈출하다 죽거나 열악한 환경에 견디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 현재 공동묘지 자리와 주변 산 곳곳에 암매장을 하였다. 선감학원 직원은 경찰, 의사 등의 입회하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나 관련 ‘매장 허가서’는 남아있지 않고, 암매장을 도운 수용아동들은 매장과정에서 경찰이나 의사를 목격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경기도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2018.1.)⁸⁾에 따르면, 현재 공동묘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략 150구 정도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발굴과정에서는 이보다 많은 유해가 발굴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8)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선감학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6), p.33.

9)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원산폭격, 비행기, 인간나룻배 등등 단체기합을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같은 원생인 사장에 의한 폭력이 더 심하였다.

IV.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검토

1. 국가폭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당시 부랑아의 강제적인 수집, 격리, 수용은 「헌법」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제한한다고 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자유(제12조 제1항)를 비롯하여 고문을 당하지 않을 자유(같은 조 제2항), 영장에 의한 체포·구금(같은 조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를 보장하고 있다.

선감학원이 운영될 당시 「헌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48년 제정헌법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제5조), 신체의 자유 및 강제노역의 금지(제9조), 거주 이전의 자유(제10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1962년 개정헌법과 1972년 개정헌법 모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종 훈령과 정부대책에 의한 부랑아동의 강제적인 수집, 격리, 수용 등은 당시와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

2. 국제인권규범 위반

세계인권선언(1948)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가입·발효)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등은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년 가입·발효) 제7조는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취급을 금지하고,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는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3.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과 국가의 책임

일제강점기에 선감학원이 행정상으로는 조선사회사업협회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다

고는 하나, 실제로는 「조선감화령」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가 설치와 운영에 관여하였다. 해방 이후 정부는 각종 훈령과 정부대책을 통해 부랑아를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부랑아의 수집(납치)과 단속, 입소 및 수용생활 등 전반에 걸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자행 또는 묵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¹⁰⁾

이에 관하여 위원회가 발간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권력의 범죄는 통상 정치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자행된 집단살해, 살인, 강제전향, 의문사, 실종사, 강제실종, 고문, 구금, 강제수용, 해직, 강제이주, 재산강탈, 자원수탈, 인간사냥, 노예화 등이 포함되며, 국가 내에서 지배권을 가진 권력집단이 약자인 개인 및 소수자 집단에게 자행한 인권침해도 국가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국가의 부랑아 일소라는 정책과 국가기관으로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공무원에 의한 불량소년 및 부랑아의 수집(납치)과 단속,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시설 입소와 수용생활 및 강제노동 등은 국가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저지르게 된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국가에 의하여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시된 삼청교육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저지르게 된 특수한 불법행위”라는 의견 제시한 바¹²⁾ 있다.

위원회는 2017. 12. 선감학원 사건과 유사한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 및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피해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조례와 원생대장의 관리, 선감학원 특별감사 보고서, 선감학원의 폐쇄 결정 등을 볼 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선감학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¹³⁾ 부모 등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색이 남루하거나

10) 경찰과 단속 공무원들은 할당량이 정해진 일제 단속기간에는 연고자가 명확한 아이들까지 잡아 선감학원에 넘겼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아동들도 마구잡이식으로 수용되어 굶주림에 허덕이며 강제노동에 혹사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원과 사장, 반장에 의한 구타를 통하여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음.(2017.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경기도)

11) 국가에 의한 인권범죄는 일련의 국가 행정작용의 프로세스에서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들이 권력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불법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2018.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국가인권위, 150쪽)

1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13) 선감학원의 운영 근거는 연혁에서 언급한 경기도 조례 일부일 뿐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는 거의 없음.

주소를 모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아동들을 공무원 또는 경찰이 납치하여,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고,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굶주림 등에 시달리게 하고, 적절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 트라우마등 정신적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국가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위법한 침해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국가가 스스로 아동에게 인권 침해를 가한 국가폭력임이 충분히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부랑아 정책 및 선감학원의 운영방식이 「헌법」 등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점, 경기도가 조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 당시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아동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방이후 1982년 선감학원이 폐지되기까지의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V.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의 구제방안 모색

1.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

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인권침해에 관여된 사건으로 개별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뿐 아니라, 당시 부랑아에 대한 국가정책과 경기도가 조례 등을 통해 운영한 점 등을 볼 때 국가의 관여가 인정되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고통에 대한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은 단순한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은 고령이고, 질병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고 있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즉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은 입법적인 문제, 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고려해 볼 때 훈령과 정부대책에 의한 손실보상적 측면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및 보상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논의를 통하여 법률이 개정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 유사사례

2005. 5.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기초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조사활동을 개시하였는데, 위 기본법은 주로 진상규명에 주안을 두면서 배상, 명예회복 등에 대한 조치는 별도의 입법적·행정적 방식을 염두에 두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 보상과 생활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센인들의 경제적, 의료적으로 어려운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국회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1)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총 5건¹⁴⁾으로 과거사위의 활동 종료 이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과 후속 조치, 추가적인 국가폭력 사건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이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실규명 신청기간(법 시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과거사위의 활동기간(4년 또는 6년), 과거사위 위원의 자격(인권분야 민간단체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 등 과거사위의 실제적인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3) 효과적인 조사방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사실 및 금융거래정보 요청 가능,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 등을 명시하고, 보상 심의 절차 및 관련 근거와 조사보고서의 대통령 및 국회 연례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5건이고, 이외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장준하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2건이 계류 중에 있음.

- 4) 또한 과거사 재단의 설립과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유죄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청구 가능, 허위진술이나 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관련 특별법의 주요내용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감학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업무와 권한에 대한 사항, 진상규명의 신청, 조사방법, 진상규명기간, 청문회 등의 명시,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기념관 및 위령공원 건립 등 기념사업 수행 등을 포함하되, 입법과정에서 피해생존자, 피해사망자의 유가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2. 특별법 제정 이전의 조치 필요성

가. 현재 선감학원에 수용되었던 생존자는 고령으로 여러 가지 질병 및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다수는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정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앞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1차적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존자의 50%는 선감학원 퇴소 후 구걸 및 부랑생활을 하였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이들이 32%에 달하며, 약 40%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1)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한 공공근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 2) 민간에 임대중인 현 선감학원부지에 피해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쉼터 제공
- 3) 자발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주거 및 자립공간의 마련
- 4) 경기도립병원 등을 통한 피해자의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 5) 선감학원 기념관 및 기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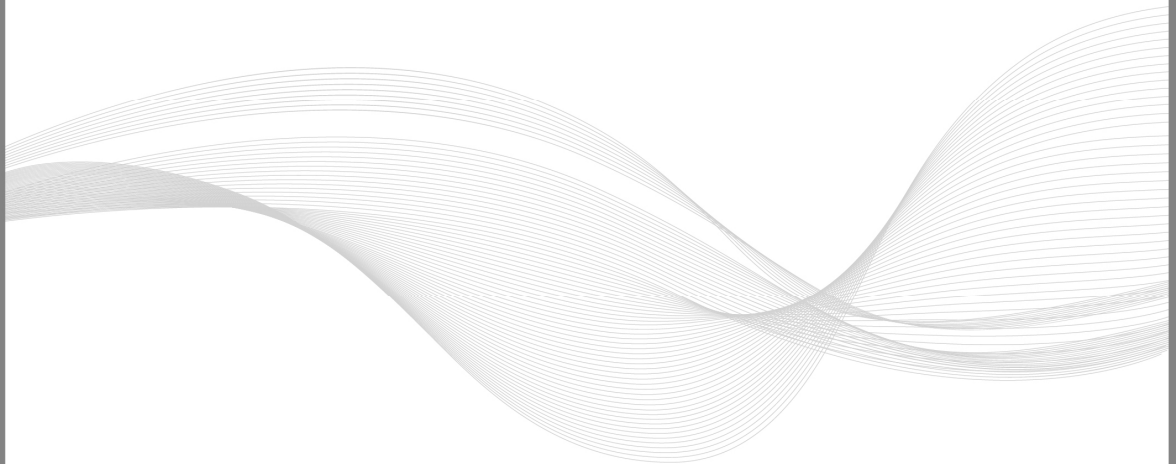
2018. 10. 22.

위원장	정문자
위원	한수웅
위원	김기중

토론문

선감학원 강제납치와 피해자 상황

정진각 소장
(안산지역사연구소)



선감학원 강제납치와 피해자 상황

정진각 소장 (안산지역사연구소)

‘부랑아’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고 실적위주의 단속이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이 같은 현상은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던 일이다. 해방직후 1947년과 군사독재시절인 1970년 동아일보 가십기사인 「휴지통」에는 부랑아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의복이 남루 하고 행세가 초라하면 어떠한 양가의 남녀라도 세상에 버림을 받는 일이 허다하다 의복은 사람의 날개라고?” (1947년 8월 27일 동아일보 휴지통)

“구두딱이가 신사복 차림으로 거리에 나서야 하겠느냐”고 투덜투덜 (1970년 8월21일 동아일보 휴지통)

미아가 된 쌍둥이형제는 부모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없도록 서류상 전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리해서 기록하였다. 1960년대에는 부모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천신만고 끝에 찾아 낸 아이들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수용의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립 아동 보호소를 거쳐 어느 정도 선별하여 선감학원으로 보내지만 경기지역은 단속일 즉시 입소시켜 수용에 대한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가운데에는 단순히 섬에 불법 집단이 모여 어린아이들을 강제노역을 시키는 곳에 시청 직원이 몰래 인신매매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선감학원이 국가에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방송을 보고처음 알게 된 경우도 있다. 1960년대 부랑아 단속과 무허가 판자집 시외 추방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족 이산이 발생이 발생하고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사과

선감학원 입소는 국가로부터 사회적 지위의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선감학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국가가 상당한 불량이 있는 아이들만 외딴섬에 가두어 놓은 것으로 선전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선감학원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선감학원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는 취직, 혼인 사회활동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현재도 피해 생존자들은 가족에게조차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응어리를 풀어줄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당시에 부랑아 단속이 잘못된 점과 운영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2. 피해 생존자의 진단과 의료지원

성장기인 10살 내외의 아동들이 굶주림과 심한 구타와 한계를 넘는 중노동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갑작스러운 수용과 가족과의 이별 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구타로 인한 후유증이 나이든 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전반적 정신적 신체적 진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3. 다크투어리즘의 중심 / 선감 평화공원 설치

선감학원 운영 당시 숙소였던 건물이 지금도 빈 건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옛 건물과 주변 길을 원래형태대로 복원하고 근현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뒤 자료전시관, 피해 생존자회관 등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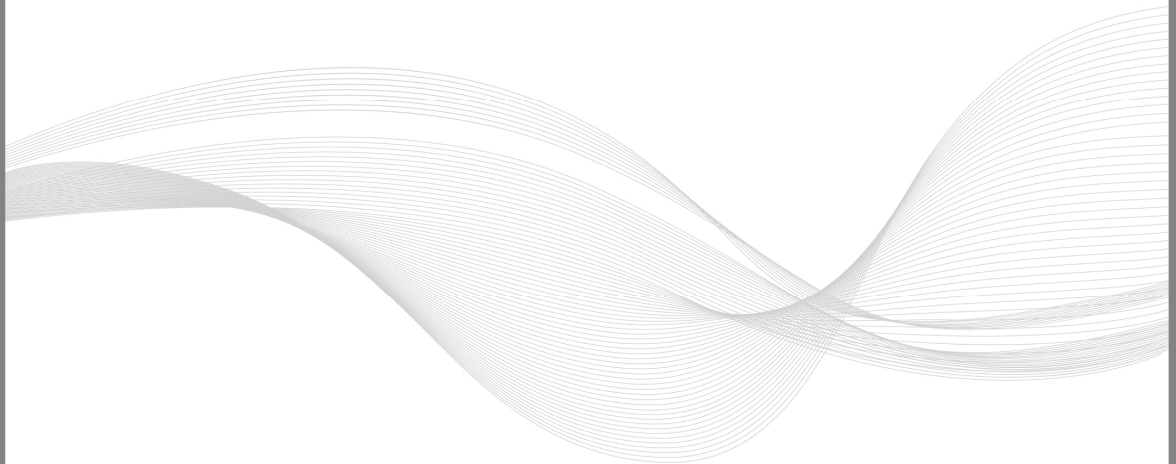
또한 생존자 중심으로 공원을 운영하여 지금현재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과 생활 안정지원도 겸하도록 한다.

토론문

선감학원사건 관련 토론회

김민환 교수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선감학원사건 관련 토론문

김민환 교수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1. 과거사 사건의 공식적 해결 과정

흔히 과거사 사건의 공식적 해결 과정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피해 회복(배보상,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치료 제공, 관련 서류의 정리 등)-재발 방지책의 제도화(법적, 제도적, 교육적, 상징적 차원에서)-추모 및 사회적 위령”. 이런 공식적인 과정 앞에 피해자의 자기증언을 통한 사회적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감학원사건’의 경우, 공식적인 과거사 사건 해결 과정에 돌입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과정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파악하면, ‘특별법’ 제정 혹은 ‘진화위법’의 개정 등의 작업은 ‘끝’이 아니라 겨우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

2. 진상규명의 쟁점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피해내용과 여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진상규명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등과 같은 시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혹은 눈감아버린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서 진상규명할 수 없다. 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이 부분을 규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재발 방지책’을 고민할 때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찰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정으로’ ‘포용’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왜 그런가? 피해자들의 피해내용과 그들의 존재자체를 기억할 책임을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혹은 ‘우리’는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데도 왜 그들을 기억하는가? 혹은 기억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통에 대한 공감’이다. 압도적이고 부조리하게 행사된 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태도는, 피해자의 고유성이 전해지고 기억되기 위한 의문의 여지 없는 바탕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와 ‘연루(implication)’되어 있음을 통해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이다. 역사와의 ‘연루’라는 개념은 테사 모리스-스즈키가 제시한 개념이다. 그녀는 과거에 발생한 폭력에 대해 현재의 개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역사적 과정과 맺는 ‘연루’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폭력을 직접 휘두르거나 강압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물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윤리적 의미에서 그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을 통한 진상규명은 이 지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가령, 1945년 이후 태어난 독일인의 경우 홀로코스트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과 똑같이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왜 1945년 이후 태어난 독일인들은 여기에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녀는 과거와의 ‘연루’의 문제를 제기한다.

... 우리는 이보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과거와 ‘연루’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꼭 뒤집어 쓰고 있는 구조나 제도, 개념의 그물은 과거의 상상력과 용기, 관용, 탐욕, 잔학행위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구조나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어 존재하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폭력행위를 통해 구축된 억압적인 제도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며, 이를 변혁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과거의 침략행위를 뒷받침했던 편견은 현재에도 계속 남아 있으며,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현 세대의 마음속에도 그것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침략행위를 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연루’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¹⁵⁾

15) 테사 모리스-스즈키, 김경원 역, 2006, 『우리 안의 과거: 미디어, 메모리, 히스토리』, 휴머니스트, pp. 45-46.

요컨대, ‘나는 그 억압에 참가하지 않았다. 내 선조도 그 억압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 역사적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는 인식이 바로 역사와의 ‘연루’이며, 이것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관계’, 즉 과거와 나와의 관계다. 좁은 의미에서의 ‘책임’이 직접적인 가해자에게 물어지는 것이라면, ‘연루’를 통해서 오히려 그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폭력적 역사와 내가 연루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지 않으면, 또, 법이 통과되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더라도 피해자들을 다시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다시 공허해질 수 있다.

3. ‘선감평화공원’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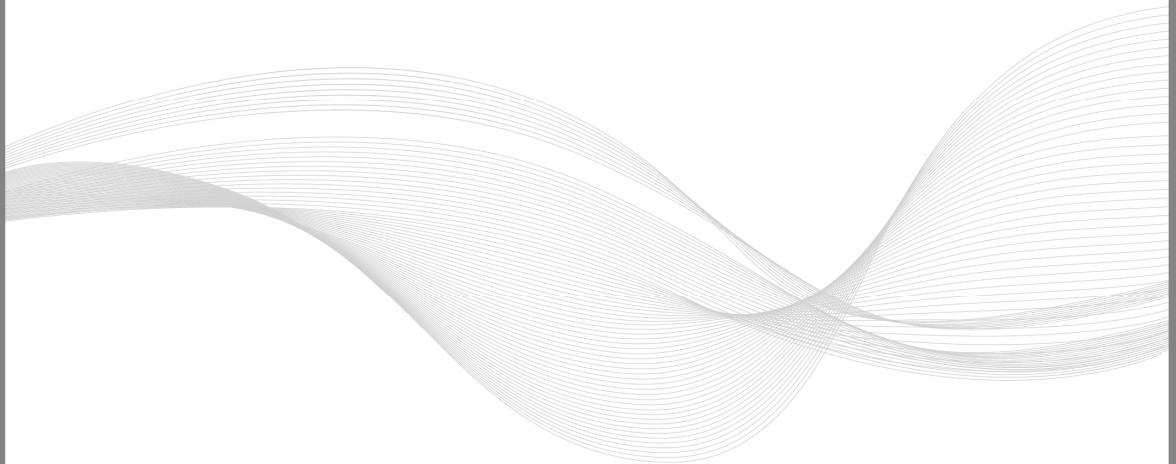
이 문제는 앞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자’들을 기억할 것이며, 그리고 ‘국가의 폭력’이 기억될 것이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들’이 기억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에 연루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가진 현재의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고통당할 때 안도했거나 외면했던 우리들이기도 한다.

토론문

효율적이고 확실한 선감학원 피해대책

한일영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효율적이고 확실한 선감학원 피해대책

한일영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1. 쉼터란 노인 요양시설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안식처 개념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어릴 적 시설에서의 지옥 같은 생활로 인하여 극심한 트라우마로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얼어 죽는다 하여도 절대로 시설에는 전부 들어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설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에서 운영하거나 도에서 운영하는 곳에 갈수도 있는데 굳이 힘들게 지옥 같은 선감도에 갈 리가 만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선감도 쉼터는 시설이란 선입견을 갖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선감학원 피해자 중에 가정이 있어도 지독한 가난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만하더라도 12월 5일에 이혼했습니다. 선감도에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명의로 된 펜션 단지를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건은 선감학원 특별법이 재정되어 진상규명된 후 국가에서 배상하면 그때 갚는 조건으로.

그전에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에서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힘써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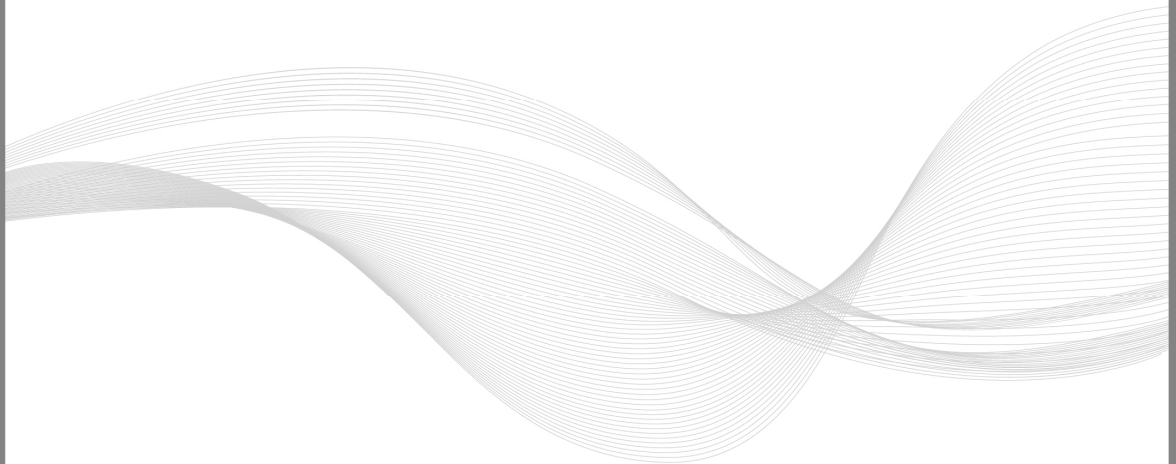
위의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던 피해자들도 가정이 있는 자들과 더불어 오손도손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토론문

선감학원사건 관련 토론회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선감학원사건 관련 토론문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 내무부 훈령 제 410호 부랑인(아) 단속지침으로 인한 경찰, 공무원 등의 국가 공권력에 의해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부랑인으로 단속 검거 되어 부랑인(아)일시 수용소에 감금당하고 모진 구타와 강제노역등 성폭력에 시달리다 반항하면 고문 등 허가받지 않은 씨피제 등을 먹여 정신이상자를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 한 사람만을 죽인 것이 아닌 그 피해자의 가족 자체를 파괴시킨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축소 은폐된 이유!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회정화사업으로 인해 그 악랄함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헌법을 수호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은 시민들을 경찰 공무원들의 시각적 인지 지점으로 부랑인으로 둔갑시켜 부랑인 수용소에 가둘 수 있게 했다는 점이 경악하게 한다.

사람을 가둘 수 있게 한 근거는 내무부 훈령 제 410호 부랑인(아) 단속지침이 다.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기 전부터 박정희 때부터 많은 시민들이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고, 감금되었음을 살아있는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두환은 정권을 강제 찬탈함으로써 이미 민주주의 국가에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었고, 자신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을 추진하며 사회정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국민들에게 안전한 사회와 복지강국이라는 슬로건을 걸어 전두환 정권을 포장하는데 이용 하였다. 그때 사회정화사업으로 추진된 안전한 사회의 사회악으로 불린 사람들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고, 또 복지강국이라는 슬로건을 이행하기 위해 가난한 시민들을 부랑인으로 둔갑시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시킴으로써 사회가 깨끗해졌음을 시민들에게 보이고 자신의 독재가 타당성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데 이용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은 형제복지원 원장이 펴낸 ‘형제복지원은 이렇게 운영하였다.’라는 책에도 나와 있으며, 많은 국가 자료나 언론자료들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1차 신민당 조사가 들어가고 많은 언론들이 부랑인 수용소에 인권실태를 파헤치며 성지원등 기사를 내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1987년 6월 항쟁이 (고)박종철 열사의 검찰에서 고문으로 인한 사망에 의해 들불처럼 번지고 커지자, 전두환 정권은 안전한 사회와 복지강국이라는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어떻게든 형제복지원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것을 추론 해볼 수 있다.

당시 김용원 검사는 박희태 부산 지검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외압에 시달려 왔음을 2018년 현재까지도 증언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7번의 재판에서 고범에서 특수감금을 유죄로 인정함에도 대법에서는 계속 무죄취지로 고범으로 돌려보냈으나, 고범은 대법의 권위에 눌러 고범에서는 유죄이나 대법이 무죄라 하니 무죄로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전두환은 부산에 내려와 구속되어 있는 박인근 원장을 옹호하며 부산 시민들에게 거리의 부랑자가 없으니 얼마나 보기 좋냐 하며 박인근 원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검찰의 수사의지를 꺾어 내리게 하였다.

형제복지원은 왜 폐쇄되었나?

1987년 박인근 원장이 구속 되고 형제복지원내 인권유린 수사를 확대하려 하자 정권은 부랑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회에 얼마나 위해를 가하는 존재인지를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하듯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인간의 삶이 아닌 짐승의 삶으로, 노역과 구타 성폭행 고문 등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가를 역이용한 것인데, 이미 폭력에 길들여졌고, 자신을 찾지 않았던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지경인데, 그런 그들에게 십원 한 장 주지 않고 그저 상담차 “이곳에서 나가면 뭐하시겠습니까?”라는 이 말에 “집으로 가겠다”는 그 말에 진상규명은 하지 않은 채 그냥 풀어주고, 피해자인 그들은 단지 형제복지원에서 벗어날 수 만 있다면 된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입소 자료나 모든 것을 챙길 틈도 없이 사회로 쏘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돈도 없이 사회로 나온 이들은 자신들의 집을 찾기는커녕 진짜 거리의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때로 지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 정권은 단지 박인근 원장 하나를 보호하고 부랑인 수용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4천여 명의 사람들을 시민들로부터 부랑인 이라는 낙인을 찍는데 이용하기 위해 형제복지원을 폐쇄시켰다는 것을 현재 2018년 시민들의 시각에서도 고스란히 들어난다. 아직도 어떤 이들은 “니들이 거지새끼였으니까 그런데 간헐던 거지!”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난 후!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난 후, 정권은 가장 먼저 시민들을 가둘 수 있게 했던 근거가 되는 내무부훈령 제 410호를 가장먼저 폐지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사람을 그냥 뒤에서 관계도 없는 사람이 벽돌로 뒤통수를 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흥기로 사용했던 벽돌을 다른 곳에 버리고 나는 아무잘못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죽지 않았고, 잠시 기억을 잃었을 뿐이었고, 그 기억을 되살리는데 시간은 무려 25년이 필요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겪은 인권유린

이미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하는 순간부터 심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감금의 상태이며,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가 겪은 인권침해 사례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기본권들이 침해당했다.

세벽4시 기상, 칫솔도 없이 굵은 소금에 의해 손가락으로 양치하기, 물3바가지로 세면 끝내기, 강제적인 성경, 찬송가 외우기, 먹기에 부적절한 음식을 그마저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으며, 기상과 동시에 시작되는 매질과 언어폭력, 취침중 동성간 성폭행, 생리적인 대소변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며, 인간으로써의 자존감을 없애기 위해 자신이 짠 대변을 먹게 하였고, 마음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보니 쥐나 뱀 껌질 술방울, 나뭇잎, 무덤가에 떠온 흙들을 햇볕에 말려 먹기도 하였다. 너무 심한 구타에 팔이 부러지거나 발이 부러져 장애가 생기는 것은 다반사고, 심하면 죽어나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 또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씨피제를 강제 복용시키기도 하여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형제복지원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스스로 혀를 깨물어 결핵소대로 들어가는 원생도 발생하였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는 꿈조차 꾸지 못하였다. 인권유린이라 함은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다 보니 아직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그러한 후유증이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피해생존자란 의미

어떠한 사건에 피해자는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자’라기 보단 ‘피해를 입고 생존한 자’이고 싶다. 즉 피해자라 함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이 나라에서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스스로 말도 잘못하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저 동정 받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비추는 이 분위기에서는 피해자라는 굴레에서 피해당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서 스스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자, 기록자로 당당하게 이 나라에서 버텨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우리는 생존자로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 하는 길이라고 본다.

피해당사자 운동이란?

피해당사자 운동이란, 그 누구도 직접 피해를 입은 자 보다 피해사실을 더 잘 증명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당사자이고, 자신과 같은 피해사실을 다른 이가 겪지 않게 하는 노력에는 피해당사자들의 자신이 겪은 인권유린 사건을 과장되게 할 필요도 없이 당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데 있다. 물론 증언하는 과정에서 되새김질 하는 기억들로 인해 심적으로 무수히도 많은 고통은 따르겠지만, 이미 겪은 상처는 자신이 겪었고 다른 이가 우리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기에 참고 견디며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피해당사자 운동이다.

또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1선에서 농성을 하거나,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 어떻게든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 운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기다리는 이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이 해온 활동

2012년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살아남은 아이> 책을 쓰고, <숫자가 된 사람들> 이라는 책에 11명의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책이 나왔으며, 2014년 부산시청 항의 집회가 있었고, 교정시설에 피해생존자들의 증언 연극을 전국 순회공연을 한바 있고, 2014년 광화문광장 국민 서명전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 서울 변방연극제에서 그림전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렸으며, 2015년 국회 앞 식발식과 58일간의 연좌농성을 통해 공청회를 열수 있었으며, 2015년 12월 특별법 통과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2017년 9월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22일간 546km 국토대장정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국회 앞 장기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언론을 통해 무수히도 많은 피해생존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을 증언해 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우여곡절 끝에 피해생존자 모임은 아직 분열되지 않고 꾀꾀하게 하나의 단체로 자리 잡았고, 부랑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이유 없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을 사회가 받아 드리기 시작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래된 형제복지원 사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 하는 권고를 내린 점!

둘째! 부산시청 오거돈 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책임을 인정한 사과가 있었으며,

셋째! 부산시의회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을 부산시민의 날에 초청함으로써 부랑인이라는 물건 취급당하던 낙인에서 부산시민으로써 인정하였다는 점!

넷째! 대검찰청 문무일 총장이 눈물의 사과를 하며 국가 공권력이 잘못 행사 되었던 점을 사과하였던 점들이 있다.

다섯! 국가기관의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시민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사과들로 인해 국가폭력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게 되었고, 부랑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죄를 짓지 않은 이상 어디에도 수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 다만 국회만 아직 이러한 여론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음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과거는 과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과거가 현재이고 미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적폐이자 병폐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후 얼마나 많은 시설에서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모른 척 했는가를 알 수 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시설의 악법들을 뜯어 고쳤더라면 지금 현재 탈시설은 더 빨리 진행되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시설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외압을 행사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공무원 또한 엄한 처벌에 처하였다면 지금의 사법파괴 범조인들이 판치는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사회시스템에서 그 누가 내부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국가를 신뢰하는 공무원이 많은 세상에선 외압이 있을 수도 없고 헌법을 준수하는 공무원이 많을수록 시설 안에서 인권유린 당하는 이들은 없었을 것이다. 오래된 사건중 하나일 수 있어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그 오래된 기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제 많은 시민들은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바로 잡으려 한다.

트라우마 치유!

‘트라우마는 개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유는 주변에 관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아픔은 다시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는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닌 견디는 힘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견디는 힘을 키우는 데에는 처음에는 어렵고 괴롭더라도 계속 아픔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들어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아픔을 들은 이가 자신의 아픔 또한 그에게 들려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아픔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근접선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아픔만 말하게 되면 그것은 돌아선 후에 언제나 후회로 다가 왔고, 그 이야기를 온전히 들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아픔을 공유한 사이가 된다면 서로 의지하게 되어 신뢰를 통해 자신의 아픔 또한 계속 말하고 들음으로써 무너지고 함께하는 이의 눈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날카로운 칼은 가끔 한 번씩 꺼낼 때 그 날카로움을 알게 되지만, 계속 사용된 칼은 무뎠지기 마련인 것과 같다.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함께 해줄 사람들이 절실할 정도로 우선이어야 한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토론회에 맞춰 써야 하는 관계로 다 표현 못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이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인쇄	2018년 12월
발행	2018년 12월
발행인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주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2층
전화	02-2125-9644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리드릭 02-2269-1919
ISBN	978-89-6114-665-4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